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19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0년 9월 일 (제294회) |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제출연월일 | 2010년 8월 25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19 |
|----------|----|

제출연월일 : 2010년 8월 2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
- 시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 제시로 사용료 징수 등에 명확성 확보

2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 및 제10조)
 -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개정 등
- 연수원 사용료(생활관) 인상(별표)
 - 공무원교육관 : 5,000원 ⇒ 10,000원
 - 도민교육관 : 3,000원 ⇒ 5,000원
- 생활관 퇴실시간 및 연수원 1일 사용기준 시간 제시(별표)
-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 제시(별표)
- 연수원 사용료 인상분 등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(부칙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 자치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“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“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사용범위”를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“이라 한다) 시설물의 사용범위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취소등”을 “취소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징수·반환등”을 “징수·반환 등”으로, “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규정”을 “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제2항 별표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연수원 시설물 사용료(제6조 관련)

| 시설명 및 사용구분 | | 시설규모 | 사용료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생활관 | ○ 공무원교육관 | 100실 | 10,000원 | ○ 1인 1박 기준 (다음 날 13:00까지) |
| | ○ 도민교육관 | 25실 | 5,000원 | |
| 대강당 | ○ 동절기(11월~5월) | 200석 | 150,000원 | ○ 1일 사용 기준 |
| | ○ 하절기(6월~10월) | | 100,000원 | |
| 강의실 | ○ 50석 이상 | 4실 | 50,000원 | ○ 1일 사용 기준 |
| | ○ 50석 미만 | 3실 | 30,000원 | ○ 1일 사용 기준 |
| 전산실습실 | | 50석, 2실 | 100,000원 | ○ 1일 사용 기준 |
| 분임토의실 | | 6실 | 20,000원 | ○ 1일 사용 기준 |
| 운동장 | | 1면 | 70,000원 | ○ 1일 사용 기준 |
| 테니스장 | | 2면 | 20,000원 | ○ 1일 사용 기준 |

※ 1일 사용 기준은 8시간으로 한다.

- 사용기준 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적용

※ 초과사용료 가산

- 1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25% 가산

-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 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 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2조(사용범위) <u>사용범위</u>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강당, 강의실, 분임토의실,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시설물 2. 숙박 및 체육시설 3.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등 | <p>제2조(사용범위) 충청북도자치연수원 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 시설물의 <u>사용범위</u>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강당, 강의실, 분임토의실,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시설물 2. 숙박 및 체육시설 3.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등 |
| <p>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연수원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. 시설물의 개·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3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| <p>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연수원장은 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. 시설물의 개·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3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4.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등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.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p>제6조(사용료)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사용료는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하되 별표와 같다.</p> <p>제7조(사용료 감면) 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| <p>4.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.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p>제6조(사용료)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7조(사용료 감면)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2. 기타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</p> <p>제10조(준용규정)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른다.</p> | <p>2. 기타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</p> <p>제10조(준용규정)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</p> |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

제140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③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

⑤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-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